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4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김현정·강훈식·이광희

한정애 • 김승원 • 박상혁

김동아 · 민형배 · 장경태

김 윤 ·김남근 · 채현일

강준현 · 정진욱 · 허성무

오세희 • 민병덕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 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를 "제5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제10항에"로 한다.

- ②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을 말한다)이 부담한다.
- ④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 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이라 한다)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 원회가 선정한다.

- ⑤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경우에는 같은 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계열회사간 합병 등을 결의할 수 있다.
- ⑦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합병 등을 한 주권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을 말한다)과 그 법인의이사,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었을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7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항의 책임이 있다.
- ⑨ 제8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

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5조의18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6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한 경우

4의3. 제16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1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
				른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
				액은 주식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
				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
				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
				은 주권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
				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
				인을 말한다)이 부담한다.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신 설></u>				④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
				<u> 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u>
				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
				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
				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신 설>

<신 설>

<신 설>

경우 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기 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⑤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 (이하 이 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한다.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그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 법인의특수관계인인 자는 의결권을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계열회사간 합병 등을 결의할 수 있다.
⑦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

<신 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 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

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합병 등을 한 주권 상장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주권상장법 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을 말 한다)과 그 법인의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 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 게 결정되었을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제7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항 의 책임이 있다.
- ⑨ 제8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 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 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 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u>제2항</u>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u>제3항</u> 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 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 ~ 3. (생 략)
-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u>제3항</u>
①
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및 방법,
<u>제10항에</u>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한 조치)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65조의4제3항</u>

5. ~ 25. (현행과 같음)

5. ~ 25. (생략)